

『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5월 2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5월 26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6월 4일

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이 수 영

나. 제안이유

「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」의 적용 시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(‘15.1.1 시행)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법체계에 맞게 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」 적용 시한을 연장함.
-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축소(안 제3조).
 - 감면율 100% → 75%
- 문화재보호구역 법령 위임 재산세 감면을 추가 50%적용(안 제4조).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7조, 제38조, 제55조
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, 제27조
「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」 입법예고문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규제개혁T/F팀, 청렴정책팀과 합의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업

○ 본 조례안은

「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」의 적용 시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(15.1.1. 시행)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법체계에 맞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부칙 제2조에서 「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」 적용 시한을 연장하였고,
-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38조제4항에 따라 100%에서 75%로 축소하였고,
- 안 제4조에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55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 법령 위임 재산세 감면율을 추가 50%적용하여 면제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「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」의 적용 시한이 2014년 12월 31일자

로 종료됨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, 「지방세특별제한법」(“15.1.1. 시행) 개정으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축소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법체계에 맞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- 5. 토 론 요 지 : 생 략
- 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- 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